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8. 28 선고 2019나2372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A(개명 전: B)

피고, 피항소인 1. C

2. D

변론 종결 2020. 8. 14.

판결 선고 2020. 8. 28.

제 1 심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7. 5. 선고 2018가소61254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구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경 피고 D의 소개로 만난 피고 C으로부터, '작년 매출이 5억 원정도 되는 유통회사로서 금융기관에 당좌거래 계좌가 개설된 주식회사 E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를 인수하려면 인수대금으로 1억 원이 필요하다. 피고 C이 5,000만 원을, 원고와 F이 5,000만 원을 부담하여 위 회사를 공동으로 인수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나. 피고 C과 F은 2013. 6. 18. 피고 D이 함께 한 자리에서 '피고 C과 F이 각 5,000만 원을 균등 부담하여 주식회사 E를 인수하고 어음당좌를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협약서(이하 '이 사건 인수협약')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주식회사 E의 인수자금으로 2013. 6. 18. 피고 C에게 G은행 발행의 자기앞수표 1,000만 원 권 1장을 교부하고, 피고 D의 계좌로 2013. 6. 19. 1,000만 원을, 2013. 6. 28. 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3. 6. 20. 원고에게 '피고 D이 2013. 6. 20.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1,000만 원은 주식회사 E의 인수자금으로 피고 C에게 전달할 것이며, 법인 인수가 2013. 6. 27.까지 되지 않을 경우 피고들이 본 금원을 즉시 반환할 것이다. 원고가 2013. 6. 18. 피고 C에게 교부한 1,000만 원도 주식회사 E의 인수자금 명목이다'라는 취지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마. 피고 C은 2013. 6. 28. 원고에게 '피고 C이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고 그차용금은 2013. 7. 1. 어음 및 법인인수자금으로 변제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확인서 및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피고 D은 이 사건 각서에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바. 대법원이 운영하는 인터넷 법인등기소 사이트상에서 '주식회사 E'라는 회사는 조회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가) 피고들이 원고에게 존재하지 않는 회사를 인수한다고 거짓말하여 원고로부터 그 인수대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인수협약은 무효이고, 이처럼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돈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2,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또는 피고들이 법인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2,5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확인서 및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약정금 2,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

피고 D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당좌거래가 가능한 회사 인수 업무를 추진할 사람으로 피고 C을 원고에게 소개시켜 주었을 뿐 이 사건 인수협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주식회사 E의 인수자금 명목의 돈을 취득한 사실도 없다. 이 사건 법률관계는 원고와 피고 C 간의 문제일 뿐이다.

나. 판단

1) 부당이득 반환의무 존부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인수협약의 무효 여부

(1)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원시적 이행불능이면 계약은 무효이다(대법원 1975. 2.10. 선고 74다584 판결 등 참조).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2850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을 이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수협약은 그 계약 체결 당시(2013. 6. 18.) 9일

이내(2013. 6. 27.까지) 당좌 거래가 가능한 회사인 '주식회사 E'의 인수를 마치기로 약정한 것인데, 그 당시 '주식회사 E'라는 회사는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인수협약의 목적은 경험칙상 처음부터 실현이 불가능하므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부당이득 여부

(1)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대법원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병합)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2273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보았듯이 원고는 이 사건 인수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법인인수 자금 명목으로 피고 C에게 2013. 6. 18.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를 교부하고, 피고 D에게 2013. 6. 19. 1,000만 원, 2013. 6. 28.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한편, 갑 제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은 자신이 수령한 1,500만 원을 그 무렵 피고 C에게 전달한 사실, 피고 C은 주식회사 E 인수를 위해 원고로부터 받은 2,000만 원(2013. 6. 18.경 수령한 1,000만 원과 2013. 6. 19.경 수령한 1,000만원)을 각 그 무렵 H에게 지급하였고, H으로부터 주식회사 E 발행의 약속어음 대신 주식회사 I 발행의 약속어음 3장(액면금 각 3,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원고에게 전해준 사실, 원고가 피고들을 법인인수자금 명목으로 위 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들은 모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3)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D은 원고로부터 수령한 돈 1,500만 원을 모두 피고 C에게 전달하였고, 피고 C은 원고로부터 직접 받거나 피고 D을 통해 받은 돈 2,5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이 사건 인수협약의 이행을 위해 법인인수 업무 관계자인 H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이 2,500만 원을 모두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달리, 피고들이 H이나 H이 위 돈을 다시 지급한 상대방으로 지목한 'J'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자와 공모하여 위 돈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 C은 원고로부터 받은 돈 중 500만 원을 보유하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이 '2013. 6. 28.경 수령한 500만 원'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인수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피고 D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 C이 원고로부터 받은 돈 중 위 500만 원에 관하여 실질적인 이득자로서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지는지 여부가 여전히 문제되나, 아래와 같이 원고가 선택적으로 구하는 약정금 반환청구에서 이 부분 반환을 인정하는 이상,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다) 소결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2013. 6. 18.경과 2013. 6. 19.경 수령한 돈 2,000만 원의 이득을 취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들의 약정금 반환의무 존부에 관하여

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들이 2013. 6.27.까지 주식회사 E의 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3. 6. 19.수수한 1,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3.7. 1.까지 어음 및 법인인수자금으로 '2013. 6. 28. 수수한 5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보았듯이 주식회사 E의 인수는 처음부터 이루어질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 및 이 사건 각서를 작성·교부하는 방법으로 약정한 내용에 따라 연대하여 약정금 합계 1,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그러나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법인인수가 무산될 경우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3. 6. 18. 수수한 1,000만 원' 역시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돈을 약정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다. 소결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정금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최고하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된 다음날인 2018. 11.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7.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구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3. 7. 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이 사건 확인서 및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약정금 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중, 판사 문성관, 판사 이주영